

최근 개정된 주요 관세청 법령 및 예규

1. 관세청의 품목분류 유권해석에 대한 재심사 신청가능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정된 품목분류 유권해석을 통보 받은 경우에 신청인이 동 품목 분류 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라도 지금까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형태로 불복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으나 2015. 2. 6부터 시행되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내용에 의하면, 관세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정된 품목분류를 통보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심사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고시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이미 시행중인 품목분류결정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품목분류 변경을 통지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동 재심사신청서의 처리기한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내용이나 품목분류 변경내용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재심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심판청구나 관세청에의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러한 심판청구결정이나 심사청구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전가격 사전심사신청 국세청 또는 관세청에 일괄신청가능(ACVA 및 APA)

(1) ACVA 및 APA제도의 운영 현황

현재 관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유권해석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운영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전조정제도의 도입 취지

ACVA제도와 APA제도를 운영하는 과세관청이 서로 달라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따른 과세가격 및 정상가격 산출시 과세의 목적 및 산출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 1. 1. 관세법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규정을 신설·시행하였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납세자(또는 수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나, 국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ACVA와 APA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동 절차로 인하여 관세청에서는 이전가격이 저가에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에서는 반대로 너무 높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사전조정의 대상

사전조정의 대상이 되는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② 재판매가격방법
- ③ 원가가산방법

2)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②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③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④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더욱 세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대영 고문이나 임준희 관세전문위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이대영 고문 | TEL. 02 316 4348 | E-Mail. dylee@shinkim.com |
| ● 임준희 관세전문위원 | TEL. 02 316 4487 | E-Mail. jhlim@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